

**대한의료정보학회**

**정관**

**사단법인 대한의료정보학회**

**(The Korean Society of Medical Informatics)**

## □ 정관

1991년 12월 2일 제정  
1993년 7월 16일 개정  
1996년 2월 16일 개정  
1997년 11월 23일 개정  
2003년 1월 10일 개정  
2004년 4월 26일 개정  
2006년 3월 16일 개정  
2006년 10월 18일 개정  
2010년 5월 6일 개정  
2020년 3월 6일 개정

##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대한의료정보학회(이하 “학회”)라 칭하고 영문으로는 The Korean Society of Medical Informatics(약칭 KOSMI)로 표기한다.

제2조(목적) 본 학회는 의료정보학에 관한 연구와 응용을 도모함으로써 의학 및 의료정보의 발전향상에 기여함으로써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본 학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내에 두며 필요에 따라 각 시도내에 지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의료정보 분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의료정보에 관한 학술연구발표회 및 토론회의 개최
2. 학술적 기술적 연구조사 및 저널발간 사업
3. 표준 및 규격의 제정에 관한 연구
4. 기술의 보급 및 발전을 위한 사업
5. 전문가 양성을 위한 기반 조성 및 교육연수 사업
6.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된 조사연구 및 용역사업
7. 위 각 호의 부대사업 및 본 학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 2장 회 원

제5조(종류 및 자격)① 본 학회의 회원은 의료정보 관련 분야에 종사하면서 본 학회의 취지에 동의해서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다만, 명예회원 및 특별회원은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추대한다.

② 회원의 종류와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 4년제 정규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의료

정보 관련 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자이거나 2년제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 의료정보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2. 준회원 : 정회원의 자격을 만족시키지 않고 있지만 의료정보 관련 분야에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자.
3. 학생회원 : 의료정보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학생.
4. 특별회원 :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상당한 재정적 협조를 하는 개인 또는 단체.
5. 명예회원 : 본 학회의 발전에 공로가 지대한 자.
6. 평생회원 : 회원으로서 내규로 정한 소정의 평생회비를 납부한 자.
7. 기관회원 : 본 회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는 연구소, 도서관, 기술정보 및 자료보급기관, 의료기관, 사업체 및 공공단체

제6조(입회절차 및 탈퇴)① 제 5조의 규정에 의한 본 학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입회원서와 소정의 입회비를 납입하고 입회심사를 받은 후 입회할 수 있다.

② 회원의 의사에 따라 탈퇴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권리 및 의무)① 회원으로 입회된 자는 본 정관에서 정한 권한을 부여받으며, 본 정관에서 정하는 이사회나 위원으로 추대 받을 권리를 얻는다.

② 모든 회원은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 4조의 사업에 성실히 동참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③ 모든 회원은 이 법인의 정관과 내규 등 제반규정을 준수함은 물론 평의원회 및 이사회 의 결의를 존중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제8조(자격정지 및 제명)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본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나 권위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거나, 본 학회에 대한 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 의결로서 회장이 자격정지 또는 제명 처분을 할 수 있다.

제9조(입회비 및 회비규정)① 본 학회에 입회하고자 하는 자는 입회비와 1년분의 회비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② 회비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은 별도의 내규로 정한다.

③ 회원이 탈퇴하거나 제명된 경우 이미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 제3장 임 원

제10조(임원) 본 학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명예회장 1인
2. 회장 1인
3. 차기회장 1인
4. 부회장 5인 이내
5. 이사장 1인(회장이 겸임할 수 없다)
6. 차기이사장 1인
7. 이사 30인 내외(명예회장, 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이사장 및 차기이사장 제외)
8. 감사 2인

제11조(임원의 선출 및 해임)① 차기회장과 차기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평의회에서 선출한다. 차기이사장은 본 학회 이사직을 역임한 바 있는 자를 추천하며 절차는 별도의 내규로 정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이, 이사는 이사장이 추천하여 평의회에서 인준한다.

③ 명예회장과 감사2인은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평의회에서 인준한다.

④ 임기 중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 임원의 변경에 관한 사항(새로이 선임된 임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은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임원의 임기)①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이 하되, 회장과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1. 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1년

2. 명예회장, 이사장, 차기이사장, 이사(회장, 차기회장 및 부회장 제외) 및 감사 2년

② 임원의 임기 중에 결원 된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2개월 이내에 보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되 잔임 기간이 3개월 이내일 경우에는 보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평의회에서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그 임무를 행한다. 단, 그 기간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13조(임원의 직무)①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평의회의 의장 및 정기학술대회 의 대 회장이 된다.

② 차기회장과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차기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회장 임기 만료 시 차기 회장이 그 직을 승계한다.

③ 감사의 직무는 제14조에서 정의한다.

④ 이사장은 본 학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이사회 의 의장이 된다.

⑤ 차기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 유고 시 차기이사장이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이사장 임기 만료 시 차기이사장이 그 직을 승계한다.

⑥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여 제24조에 규정된 이사회 의 소관 업무 및 본 학회 의 운영 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평의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을 처리한다.

⑦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총무, 재무, 학술, 편집, 간행, 홍보, 국제협력, 기획법제, 회원관리, 교육, 섭외 등의 회무 처리를 위한 실행이사를 위촉할 수 있다.

제14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민법 제 67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

2. 학회 의 업무 및 재무회계와 이사회 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여 이를 년 1회 이상 평의원총회와 이사회 에 보고

3. 제1호 및 제2호 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평의회 또는 이사회 의 소집을 요구

4. 정관 변경 개정안 감사

제15조(고문 및 자문위원회)① 회장은 법인의 운영에 관한 자문 및 상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문 및 자문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고문 및 자문위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하되 임기는 회장의 재임 기간까지로 한다.

제16조(임원의 보수) 본 학회의 임원은 비상근을 원칙으로 하고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세입 범위 내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임원의 자격제한)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본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및 금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완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견되거나 발생한 때에는 그 임원은 자연 퇴임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 제4장 평의회

제18조(구성 및 소집)① 평의회는 정회원의 5분의 1 내외의 비율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평의회는 정기평의회와 임시평의회로 구분한다.

③ 정기평의회는 년 1회 소집하며, 임시평의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회원의 3분의 10이상 또는 이사회의 서면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19조(평의원의 선출방법과 임기)① 평의원은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선출한다.

② 임원은 평의원에 당연적으로 포함된다.

③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결원이 생겼을 때에도 보선하지 않는다.

④ 평의원의 선출 시기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내규로 정한다.

제20조(의결사항) 평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개정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안 승인에 관한 사항
4. 법인 운영 내규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법인의 해산 결의 및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
6.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21조(소집절차) 평의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개최 10일 이전에 회의안건 및 목적, 장소, 일시 등을 명시한 서면에 의하여 각 평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의결정족수) 평의회는 본 정관에 별도 규정이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재적평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지며 결석평의원의 위임장은 출석정족수에는 산입하되 표결권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

제23조(회의록) 평의회의 의사는 의사록에 기록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서명 날인한 뒤에 본 학회의 주된 사무소에 보존한다.

## 제5장 이 사 회

제24조(구성 및 소집)① 이사회는 이사장(차기이사장이 임명된 경우 차기이사장 포함) 및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의장이 된다.

② 정기이사회는 년 1회 이상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나, 이사 3분의 1이상 또는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 개최 10일전까지 회의의 안건 및 목적, 장소, 일시 등을 명시하며 이사 및 감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④ 이사회는 제13조 4항 및 7항에 의거 실행이사로 구성된 실행이사회를 둘 수 있다.

⑤ 실행이사회의 의장은 이사장이 되며 회의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제25조(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2. 사업실적 및 결산안 작성에 관한 사항
3. 평의회에서 위임된 사항
4. 법인 운영 내규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본 학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평의회 또는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6. 기타 법령이나 본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

제26조(개회와 의결정족수)① 이사회는 이 정관에 특별히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 부동산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경우 또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이나 전자매체로 의결할 수 있다.

## 제6장 위원회, 지회 및 연구소

제27조(구성)① 이 정관 제 1장에 명시된 목적과 사업 수행에 필요한 연구, 조사, 개발 등의 활동을 위하여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상임위원회는 기획·법제, 학술, 편집, 간행, 홍보, 국제협력, 회원관리, 교육, 섭외 상임위원회를 둔다.

③ 특별위원회는 실행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설치한다.

④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실행이사로 하고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각 위원회의 위원은 실행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상임위원회는 2년, 특별위원회는 실행이사회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⑤ 각 위원회는 분야별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과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장 및 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고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28조(지회)① 본 학회는 지역단위의 학회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지회를 설립할 수 있다.

- ② 본 학회는 분야별 학회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연구회를 설립할 수 있다.

제29조(연구소)① 학회 연구 활동의 활성화와 정관 제4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정보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를 둔다.

- ② 연구소에는 연구소 업무를 총괄하는 소장 1인과 부소장 2인을 둔다.
- ③ 소장은 이사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하고, 부소장은 소장 추천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
- ④ 소장과 부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 ⑤ 연구소의 직제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제7장 사무국

제30조(사무국의 설치)① 본 학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필요한 인원을 둔다.

- ② 사무국은 사무국장과 사무원 약간 명으로 구성하되 이사장이 임명한다.
- ③ 사무국 각 부서의 업무분장과 직제, 인사관리, 복무,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내규로 정한다.

## 제8장 재산 및 회계

제31조(재산의 구분)① 본 학회의 재정은 다음 각호의 수입금으로 총당한다.

1. 회비
2. 보조금
3. 찬조금
4. 기타 수입금

- ② 본 학회의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 내규로 정한다.

제32조(회계 연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제33조(사업계획 및 예산) 본 학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작성하여 평의원회 및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사업실적 및 결산) 본 학회의 사업실적 및 결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감사의 감사를 받은 후 평의원회 및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회계 손익금의 처리) 본 학회의 매 회계연도 결산잉여금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하거나 시설대체 적립금으로 보존하여야 하고, 결손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회계잉여로 총당한다.

## 제9장 상 별

제36조(표창) 본 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공헌이 지대한 기관 또는 회원에게는 이사회의 의결로 표창할 수 있다.

제37조(징계) 본 학회의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1. 본 학회의 명예를 손상케 한 때.
2. 본 학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을 위반하고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때
3. 회원의 의무를 행하지 않을 때.

## 제10장 정관 변경 및 해산

제38조(정관의 변경) 본 학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평의원회의 의결 정원에 준하여 변경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9조(해산 및 합병)① 본 학회가 해산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자 할 때는 평의원회에서 재적평의원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청산인은 해산 등기를 완료한 후 지체 없이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잔여재산의 처분) 본 학회가 해산하는 때의 자산의 처분은 평의원회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이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 재단에 기부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제41조(내규의 제정)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내규로 정하되 평의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법인에 관한 규정 및 그 밖의 관계 법규를 준용한다.
3. (임원 임기의 적용 개시) 임원 임기에 관한 사항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한다.